해양경계획정의 과정에서 섬의 정의, 권원 및 효과에 관한 고찰*

이 기 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법학박사)

◀ 차 례 ▶

Ⅰ. 서 론
Ⅱ.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국제법
1. 영해의 경계획정에 관한 국제법
2. EEZ 및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국제법
3.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국제법의 적용과 섬의 존재
Ⅲ. 국제법상 섬의 정의
Ⅳ. 해양경계획정과 섬의 정의
Ⅴ. 해양경계획정과 섬이 가질 수 있는 영해의 범위
Ⅵ. 해양경계획정과 12해리의 영해를 가지지 못한 섬들에 관한 논의
1. 1999년 Eritrea/Yemen 중재사건
2. 1985년 Guinea/Guinea-Bissau 중재사건
3. 12해리의 영해를 가지지 못한 섬들이 가지는 함의
Ⅶ. 섬의 존재가 받을 수 있는 '가치부정효과'와 '절반의 효과'
1. 가치부정효과
2. 절반의 효과
3. 소 결
Ⅷ. 결 론

* 논문투고일: 2013. 3. 31, 심사완료일: 2013. 4. 20, 게재확정일: 2012. 4. 29.

Ⅰ. 서 론

1969년 2월에 판결이 있었던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의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을 시작으로 최근 2012년 11월에 판결이 있었던 ICJ의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 v. Colombia)* 사건까지 ICJ 및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와 같은 국제재판소의 판결 및 관련 국가들의 합의(또는 UN해양법협약의 관련 규정들)에 의해 설치된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포함하여 모두 17개의 '해양경계획정'(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1]에 관한 판결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의 판결들은 해양경계획정의 과정에서 '섬' 또는 '섬과 유사한 지형'[2]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러한 판결들의 분석 및 고찰은 해양경계획정에 있어 무엇이 섬으로 정의되는지 그리고 섬(또는 섬과 유사한 지형)이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원(entitlement)을 가졌으며, 경계획정의 과정에서 어떤 효과를 받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먼저 해양경계획정을 다루고 있는 '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국제법상 섬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있는 1994년에 발효한 UN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상의 관련 조문들을 간략히 개관한 후, 이어서 국제재판소의 판결들을 통해 확인된 섬의 정의, 권원 그리고 경계획정의 과정에서 섬이 부여받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1) 본 논문이 사용하고 있는 술어인 '해양경계획정'(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은 영해, EEZ 그리고 대륙붕의 경계획정은 물론 EEZ와 대륙붕의 경계선을 하나의 경계선으로 그리는 단일해양경계(single maritime boundary)의 설정까지 경계획정의 모든 태양을 포함하는 술어이다.

2) 본 논문이 사용하고 있는 '섬과 유사한 지형'이라는 술어는 일단 국제법상 섬의 정의와 관련하여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cay'와 같은 지형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아래에서 논의될 것처럼 'cay'와 같이 섬과 유사한 지형도 국제법상 섬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Ⅱ.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국제법

1. 영해의 경계획정에 관한 국제법

UN해양법협약은 '영해'(territorial sea)에 관한 경계획정과 'EEZ'(exclusive economic zone) 및 '대륙붕'(continental shelf)에 관한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각각의 조문을 두고 있다. UN해양법협약 제15조는 영해의 경계획정 수행시 두 국가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경계선은 두 국가의 영해의 폭이 측정되는 기선들(baselines) 위에 존재하는 가장 가까운 지점들로부터 등거리인 중간선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15조는 역사적 권원(historic title) 또는 특별한 사정들(special circumstances)이 존재하는 경우에 경계선은 중간선이 아닐 수 있다는 단서 또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제15조에 규정된 내용은 일반적으로 *'Equidistance-Special Circumstances rule'*로 일컬어지고 있다.

여기서 일단 검토해야 하는 문제는 UN해양법협약 제15조의 내용이 국제관습법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사실 ICJ 또는 ITLOS와 같은 국제재판소의 판결들 중에 분쟁당사국 일방이 제15조의 내용이 국제관습법이 아니라고 주장함에도 해당 국제재판소가 제15조는 명백히 국제관습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한 판결은 없다. 다만 2001년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사건에서 ICJ는 카타르가 UN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송과 관계된 '두 국가 모두' 제15조의 내용이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을 지적한 후,[3] 제15조의 내용이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인정하였다.[4]

2. EEZ 및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국제법

UN해양법협약 제15조의 내용이 구체적인 것과는 달리 제74조 제1항 및

---

3) *I.C.J. Reports 2001*, pp.93-94, para. 175.

4) *Ibid.*, p.94, para. 176.

제83조 제1항은 EEZ 및 대륙붕의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단지 관련 국가들 사이의 경계획정이 '형평한 해결'(equitable solution)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형평한 해결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은 EEZ 및 대륙붕의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이렇게 특정한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조문들이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Nicaragua v. Colombia)* 사건[5]에서 ICJ는 EEZ 및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제74조 및 제83조가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긍정하였다. 이러한 긍정의 방법은 2001년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사건에서 제15조에 대한 ICJ 자신의 취급과 마찬가지로 소송과 관계된 '두 국가 모두' 제74조 및 제83조의 내용이 국제관습법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을 지적한 후, 제74조 및 제83조의 내용이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3.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국제법의 적용과 섬의 존재

이 시점에서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UN해양법협약 제15조, 제74조 및 제83조는 섬을 취급하는데 있어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영해의 경계획정을 규율하고 있는 UN해양법협약 제15조는 경계선이 중간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단서의 하나로 '특별한 사정들'(special circumstances)을 규정하고 있는데, '섬의 존재'는 영해의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이러한 특별한 사정들의 구체적인 예가 될 수 있다. 2012년 ITLOS의 *Bay of Bengal* 사건에서 영해의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방글라데시에 속하는 St. Martin's Island의 존재는 논란을 일으켰다. 미얀마의 입장에서는 St. Martin's Island를 하나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급하기를 원하였다.[6] 그 이유는 자국의 해안에 가까운 St. Martin's Island가 특별한 사정으로 간주되지

---

5)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 v. Colombia)*, Judgment of the I.C.J.(19 November 2012), pp.48-51, paras. 138-139.

6) *Dispute Concerning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Bangladesh and Myanmar in the Bay of Bengal* (14 March 2012), pp.46-47, paras. 131-137.

않을 경우 방글라데시의 St. Martin's Island와 자국의 해안 사이에 중간선이 그려져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ITLOS는 (i) St. Martin's Island가 미얀마에 가까운 만큼 방글라데시에도 가깝고, (ii) St. Martin's Island가 방글라데시의 12해리 영해 안에 위치하여 있고, (iii) St. Martin's Island가 그 면적이나 인구 그리고 경제적 또는 그 이외의 역할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해양지형'(significant maritime feature)이라는 점 등에 근거하여 St. Martin's Island가 특별한 사정으로 간주될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7] 그러나 이와 같은 2012년 ITLOS의 *Bay of Bengal* 사건의 예에도 불구하고 섬의 존재는 특정 '영해'의 경계획정 사건에서 여전히 가장 가능성 있는 특별한 사정들 중의 하나일 것이다.[8]

그런데 중간선 또는 등거리선의 잠정적인(provisional) 설정을 전제로 한 특별한 사정들(special circumstances)의 개념이 UN해양법협약 제74조 및 제83조 내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EEZ 및 대륙붕의 경계획정과 관련하여서는 오로지 형평한 해결의 도달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관련 사정들'(relevant circumstances)의 개념만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들과 관련 사정들 개념의 규범적 위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정들의 하나의 예로 섬의 존재 또한 당연히 언급될 수 있다. 이는 EEZ 및 대륙붕의 경계획정을 수행할 때 섬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가 과제였던 상당수의 국제재판소의 판결들이 존재한다는 것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해양경계획정에서 섬의 정의, 권원 및 효과를 고찰하기 전에 국제법상 섬의 정의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Ⅲ. 국제법상 섬의 정의

UN해양법협약 제121조 1항은 섬을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만조시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

7) *Ibid.*, pp.50-51, paras. 149-152.

8) Barbara Kwiatkowska and Alfred H.A. Soons, "Entitlement to Maritime Areas of 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Netherlands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21(1990), p.143.

를 분설하면 (i) '바닷물로 둘러싸여'(surrounded by water) 있고, (ii) '만조시에도 수면 위에'(above water at high tide) 존재하며, (iii) '자연적으로 형성된'(naturally formed), (iv) '육지지역'(area of land)인 지형은 국제법상 '섬'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제121조 제1항은 섬이 되기 위한 네 가지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9] 이 요건들 중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어야 된다는 요건은 논란의 소지가 없다.[10] 하지만 '만조시에도 수면 위에'라는 요건은 무엇이 만조인지에 따라 섬인지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섬에 관한 요건들 중 가장 근본적인 중요성을 가진 요건이다.[11] 이 요건과 관련하여 해일과 같은 자연현상에 의해 '일시적으로' 만조시에 수면 아래에 있는 지형은 섬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12]

그리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러나 침식에 치명적인 불안정한 지형에 대해서는 관련 국가들이 해당 지형이 섬으로 계속 인정될 수 있도록 그 불안정성을 치유하는 방향으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기에,[13] '자연적으로 형성된'이라는 요건 그 자체의 논란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섬 또는 섬과 유사한 지형은 UN해양법협약 제121조 제1항의 정의에도 내포된 것처럼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태양이 다양하다. 그러므로 섬에 관한 정의와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연적 지형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섬 또는 섬과 유사한 지형들은 모두 '섬'(island)이라는 이름으로만 명명되지는 않는데, 이러한 명칭이 국제법상 섬인지 아닌지를 정의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섬에 관한 정의에 이어서 UN해양법협약 제121조 제2항은 섬이 영해는 물론 접속수역(contiguous zone), EEZ 그리고 대륙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즉, 섬이나 본토(mainland)는 원칙적으로 바다에 대하여 관련 해양영역들을 주장할 수 있는 동일한 '권원'(entitlement)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UN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은 섬 중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

9) Victor Prescott and Clive Schofield, *The Maritime Political Boundaries of the World*, 2nd ed.(Leide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5), p.58; 김영구,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신판)』(21세기북스, 2004), 291-293면.

10) Prescott and Schofield, *supra* note 9, p.59.

11) *Ibid.*

12) See *ibid.*, p.60.

13) *Ibid.*, p.59.

EEZ 및 대륙붕을 가질 수 없는 지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바위섬'(rock)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14] 이 제121조 제3항은 사람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섬을 바위섬의 범주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은 불명확한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해석들을 야기하고 있다.[15]

예를 들어,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의문은 '바위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단순히 '지질학적'(geological) 의미에서 바위섬을 정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정한 '크기'(size) 이하의 섬은 바위섬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는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다.[16] 이에 대해서 UN해양법협약의 채택을 위한 제3차 UN해양법회의의 과정을 살펴보면 제121조 제3항이 언급하고 있는 바위섬이란 개념은 지질학적 의미에서의 바위섬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17] 이 견해를 좀 더 발전시켜 어떤 섬이 바위섬으로 정의되느냐의 여부는 아래에서 논의될 '사람의 거주 가능성'과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고려하여 기능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견해 또한 존재한다.[18]

이어서 들 수 있는 의문은 '사람의 거주 가능성'의 의미에 관한 것이다. 어떤 섬이 사람들에게 단지 '(임시)피난처'(shelter)의 역할만 한다면 그 섬에 대해서는 그 섬이 EEZ 및 대륙붕을 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당연히 제121조 제3항을 적용해야 하겠지만,[19] 어떤 국가는 그러한 피난처의 역할을 확대해석하여 어업전진기지라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20] 게다가 '독자적인 경제활동'의 개념 역시 어업은 물론 자원개발 그리고 바위섬의 범주에 들어가는

---

14) 박찬호・김한택, 『국제해양법(제2판)』(서울경제경영, 2011), 126-127면.

15) Alex G. Oude Elferink, "Clarifying Article 121(3) of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The Limits Set by the Nature of International Legal Processes," *IBRU Boundary and Security Bulletin Summer 1998*, p.59; Yann-huei Song, "The Application of Article 121 of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to the Selected Geographical Features Situated in the Pacific Ocean,"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2010), pp.697-698.

16) See Marius Gjetnes, "The Spratlys: Are They Rocks or Islands?,"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32(2001), pp.193-194; Kwiatkowska and Soons, *supra* note 8, pp.155-156.

17) Kwiatkowska and Soons, *supra* note 8, pp.151-153.

18) 김현수, 『해양법총론』(청목출판사, 2010), 236-237면.

19) See Gjetnes, *supra* note 16, p.196.

20) Jonathan I. Charney, "Rocks That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3(1999), p.870.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섬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관광(tourism) 등과 관련하여서도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21] 마지막으로 어떤 섬이 바위섬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 '사람의 거주가능성'과 '독자적인 경제활동'이라는 두 가지 요건 모두가 필요한지, 아니면 한 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충분한지에 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22][23]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섬이 UN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바위섬'(rock)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그 섬은 최대 12해리의 영해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121조 제3항의 의의는 어떤 섬이 바위섬으로 간주되느냐의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섬은 최대 12해리의 영해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24]

그렇다면 이제 본 논문은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국제재판소의 판결들을 통해 섬의 정의와 함께 '형평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12해리에 이르는 영해를 가질 수 있는 섬의 권원은 경계획정시 최대한 존중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경계획정의 과정에서 섬이 받는 효과와 관련하여 섬의 역할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Ⅳ. 해양경계획정과 섬의 정의

섬 또는 섬과 유사한 지형의 이름이 모두 '섬'(island)으로 명명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언급하였다. 국제재판소도 섬 또는 섬과 유사한 지형의 다양한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ICJ는 2012년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 v. Colombia)* 사건에서 섬(island)으로 명명되지 않는 카리브해의 섬과 유사한 다양한 지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

21) See Gjetnes, *supra* note 16, pp.196-198.

22) See Charney, *supra* note 20, p.868; Kwiatkowska and Soons, *supra* note 8, pp.163-165.

23) 박찬호, "섬의 국제법상 지위-바위섬의 해양관할권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47권 제2호(2002), 31면은 두 가지 요건이 모두 필요한 것으로 엄격히 해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4) See Charney, *supra* note 20, p.864.

ICJ는 'cay', 'atoll', 'bank' 그리고 'shoal'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언급하였는데,[25][26] 특별히 'cay'라 함은 파도로 인해 부서진 산호초(coral reef)가 연이은 바람의 작용으로 인해 모래의 형태로 축적된 작고 낮은 지형으로 정의된다.[27] 이와 같은 'cay'에 관한 정의는 2007년 ICJ의 *Caribbean Sea (Nicaragua v. Honduras)* 사건에서도 이미 언급되었었다.[28] 이러한 'cay'와는 달리 'bank' 또는 'shoal'은 융기된 해저지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면 '아래에' 존재하는 지형인 것이다.[29] 따라서 'bank' 또는 'shoal'은 국제법상 섬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명칭에 관계 없이 만조시에도 수면 위에 존재하는 지형은 아무리 크기가 작더라도 UN해양법협약 제12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섬'의 범주에 포함되어 영유(appropriation)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30] 이와는 달리 간조시에만 수면 위로 드러나는 '간조노출지'(low-tide elevation)는 영유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영해 내의 간조노출지에 대해 관련 국가가 주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그 국가가 영해 그 자체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31]

2012년 ICJ의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 v. Colombia)* 사건에서 Nicaragua와 Colombia는 Alburquerque Cays와 East-Southeast Cays, 그리고 하나의 atoll로 간주되는 Roncador, bank들로 간주되는 Serrana, Serranilla와 Bajo Nuevo에 존재하는 'cay'들이 영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섬들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32] 하지만 이 사건에서 Quitasueno

---

25)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 v. Colombia)*, Judgment of the I.C.J.(19 November 2012), p.15, para. 20.

26) 본 논문은 cay, atoll, bank 그리고 shoal이라는 단어들을 번역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섬(island)이라 명명되지 않는 지형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이다.

27)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 v. Colombia)*, Judgment of the I.C.J.(19 November 2012), p.15, para. 20.

28) *I.C.J. Reports 2007*, p.672, para. 28.

29)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 v. Colombia)*, Judgment of the I.C.J.(19 November 2012), p.15, para. 20.

30) *Ibid.*, p.19, para. 26.

31) *I.C.J. Reports 2001*, p.101, para. 204.

32)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 v. Colombia)*, Judgment of the I.C.J.(19 November 2012), p.19, para. 27.

지역은 섬의 범주에 포함되는 지형이 존재하는지와 관련하여 논란을 야기하였다. 다시 말해, Quitasueno 지역에 cay와 같은 만조시에도 수면 위에 존재하는 지형이 있는지의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서로 다른 자료 및 방법에 근거하여 Colombia는 34개의 지형이 만조시에도 수면 위에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지만,[33] Nicaragua는 'QS32'라는 지형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형들이 만조시 수면 아래에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34] 게다가 Nicaragua는 이 QS32는 산호들의 잔해에 불과하여 UN해양법협약 제121조 제1항이 말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이 아니라는 논리와 함께 섬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지형의 크기 또한 중요하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다.[35]

이에 대해 ICJ는 어떠한 자료에 근거하든지 간에 QS32는 명백히 만조시 수면 위에 존재한다고 하면서, QS32가 산호들로 구성되었는지의 여부는 섬으로 간주되는데 있어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36] 이 QS32는 Nicaragua가 선호하는 자료에 의하면 만조시 0.7m에 불과하다.[37] 이미 2001년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사건에서 ICJ는 만조시에 0.4m에 불과한 Qit'at Jaradah가 섬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었다.[38] 결론적으로 국제재판소는 UN해양법협약 제121조 제1항 중 '만조시에도 수면 위에'라는 요건에 의해 섬인지의 여부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즉, 어떤 섬의 명칭, 크기, 지질학적 구성, 제121조 제3항이 언급하고 있는 바위섬(rock)으로 간주되는지의 여부는 섬인지를 인정하는데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다.

Ⅴ. 해양경계획정과 섬이 가질 수 있는 영해의 범위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섬이 가질 수 있는 '대륙붕'의 범위가 문제가

33) *Ibid.*, p.19, para. 29.
34) *Ibid.*, p.20, para. 31.
35) *Ibid.*, p.20, para. 32; *ibid.*, p.20, para. 33.
36) *Ibid.*, p.22, para. 37.
37) *Ibid.*
38) *I.C.J. Reports 2001*, pp.99-100, para. 197.

된 사건은 1977년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중재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영국의 주권이 미치고 있는 Channel Islands가 어느 정도의 대륙붕을 가져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더구나 Channel Islands가 영국보다 프랑스의 해안에 가깝다는 점은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였다. 프랑스는 이와 관련하여 Channel Islands가 그 섬의 북쪽과 서쪽으로 6해리의 한정된 대륙붕 영역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9] 그러나 중재재판소(Court of Arbitration)는 Channel Islands가 이미 12해리의 어업수역(fishery zone)을 가지고 있다는 점[40]과 영국이 12해리의 영해를 선포할 수 있었다는 점[41]에서 12해리의 한정된 대륙붕 영역을 가져야 한다고 결론지었다.[42] 이 사건은 영해의 경계획정과 무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섬은 12해리의 영해를 가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에 발맞추어 12해리 미만의 영해를 가지고 있는 섬은 최소 12해리의 대륙붕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가리키고 있다. 비록 Channel Islands가 12해리의 영해를 가지게 되면 영해에 대한 주권이 해저 및 그 하층토에 미치므로 12해리의 대륙붕은 그 존재의의가 없게 되지만,[43] 12해리에 이르는 영해의 보장이 예상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사건이 결론지어진 것은 섬에게 있어 '12해리'가 갖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984년 *Gulf of Maine* 사건 이후 EEZ 그리고 대륙붕의 경계를 하나의 경계선으로 획정하는 '단일해양경계(single maritime boundary)의 설정'이 해양경계획정의 주된 과제가 되면서 1977년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중재사건과 같이 오로지 대륙붕 하나만의 경계를 획정하는 사건은 1985년 ICJ의 *Continental Shelf(Libya/Malta)* 사건 이후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UN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위섬으로 간주되지 않는 섬은 제121조 제2항에 의해 200해리에 이르는 대륙붕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대륙붕의 최소범위가 12해리여야 한다는 의미의 1977년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중재사건은 이제 역사적인 의미만 가졌다

---

39)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French Republic* (Geneva, 30 June 1977), UNRIAA, Vol. XVIII, pp.76-77, para. 150.

40) *Ibid.*, pp.89-90, para. 187.

41) *Ibid.*

42) *Ibid.*, p.95, para. 202.

43) Yoshifumi Tanaka, *Predictability and Flexibility in the Law of Maritime Delimitation* (Portland: Hart Publishing, 2006), p.188.

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섬에게 있어 '12해리'라는 의미는 '최소한' 보장되어야 하는 섬의 바다에 대한 권원의 범위라 할 수 있다. 이 점은 곧바로 1985년 *Guinea/Guinea-Bissau* 중재사건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 사건에서 Guinea의 Alcatraz Island는 북쪽으로 단지 2.25해리의 영해만 가질 수 있었다.[44] 그 이유는 이미 존재하고 있던 '1886년 협약'이 언급하고 있는 '남쪽 한계선'(southern limit)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45] 하지만 중재재판소(Arbitration Tribunal)는 Alcatraz Island의 '최소한 서쪽으로'(at least towards the west) 12해리의 영해를 보장하였다.[46] 즉, 12해리는 섬에게 있어 최소한 보장되어야 하는 해양영역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섬에게 EEZ 및 대륙붕은 부여하지 못하더라도 '최소' 12해리의 영해를 보장하지 않으면 '형평한 해결'(equitable solution)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근거를 가지게 된 것이다.

1992년 *Saint Pierre and Miquelon* 중재사건 역시 섬에게 있어 이와 같은 최소 12해리의 해양영역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캐나다와의 경계획정에서 프랑스의 두 섬인 Saint Pierre와 Miquelon에게 Q지점부터 S지점까지 반경 12해리의 원호를 한계로 삼은 해양영역이 주어졌는데, 이 영역은 Saint Pierre와 Miquelon이 받은 해양영역들 중 두 섬에게 가장 최소의 범위로 주어진 영역이었다.[47] 그 외의 영역들, 예를 들어 Saint Pierre와 Miquelon의 서쪽 영역인 D지점부터 I지점까지는 반경 24해리의 원호를 한계로 삼은 영역이 주어졌고,[48] 두 섬의 남쪽 영역으로는 좁은 통로(corridor) 모양의 200해리에 이르는 영역이 주어졌다.[49]

이후 2007년 ICJ의 *Caribbean Sea(Nicaragua v. Honduras)* 사건과 2012년 ICJ의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 v. Colombia)* 사건을 통해 섬에게 있어 최소 12해리의 영역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

44) *The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Guinea and Guinea-Bissau* (The Hague, 14 February 1985), *ILM*, Volume 25, p.298, para. 111.

45) *Ibid.*, pp.295-296, paras. 105-106.

46) *Ibid.*, p.298, para. 111.

47) *The Delimitation of Maritime Areas between Canada and France* (New York, 10 June 1992), *ILM*, Vol. 31, p.1177.

48) *Ibid.*, p.1170, para. 69; *ibid.*, p.1177.

49) *Ibid.*, pp.1170-1171, paras. 70-71; *ibid.*, p.1177.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2007년 *Caribbean Sea(Nicaragua v. Honduras)* 사건에서 Nicaragua는 Honduras의 'cay'들인 Bobel Cay, Savanna Cay, Port Royal Cay 그리고 South Cay가 그들의 크기와 불안정성(instability)을 고려하여 3해리의 영해만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50] 이에 대해 일단 ICJ는 Nicaragua와 Honduras 양국 모두 언급된 네 개의 'cay'들이 수면 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다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들을 '섬들'(islands)로 지칭하였다.[51] 그리고 ICJ는 UN해양법협약 제3조를 언급하면서 Bobel Cay, Savanna Cay, Port Royal Cay 그리고 South Cay가 12해리에 이르는 영해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하였다.[52]

2012년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 v. Colombia)* 사건에서도 ICJ는 Colombia에 속하기는 하지만 Colombia의 좀 더 큰 섬들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존재하는 Quitasueno와 Serrana 지역에 대해 12해리에 이르는 영해가 인정된다고 하였다.[53] 따라서 Quitasueno와 Serrana 지역을 12해리의 거리를 한계로 삼아 둘러싼 영역을 영해로 인정하였다. 더구나 ICJ는 이렇게 12해리의 거리를 한계로 삼아 둘러싼 영역을 '가장 형평한 해결'(the most equitable solution)이라고 지칭하였다.[54] 다시 말해, 섬에게 최소 12해리라는 영해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한 해결의 한 예로 언급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12해리라는 범위의 영해가 부여되지 못한 몇몇 섬들의 사례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Ⅵ. 해양경계획정과 12해리의 영해를 가지지 못한 섬들에 관한 논의

해양경계획정이 형평한 해결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

50) *I.C.J. Reports 2007*, p.751, para. 300.

51) *Ibid.*, p.702, para. 137.

52) *Ibid.*, p.751, para. 302.

53)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Nicaragua v. Colombia)*, Judgment of the I.C.J.(19 November 2012), p.90, para. 238.

54) *Ibid.*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섬에게 있어 12해리에 이르는 영해는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12해리의 영해를 갖지 못한 몇몇 섬들에 관한 논의 또한 필요할 것이다.

1. 1999년 Eritrea/Yemen 중재사건

1999년 *Eritrea/Yemen* 중재사건에서 Yemen의 Zuqar 섬은 엄격하게 12해리의 영해를 보장받지 못했다. 다시 말해, Zuqar 섬은 관련 두 지점들(즉, 13과 14)을 연결하는 직선에 의해 12해리 영해와 '유사한' 영해를 가졌을 뿐이다.[55] 이 사건에서는 엄격하게 12해리의 영해를 보장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좀 더 간결하고 좀 더 편리한'(a neater and more convenient) 경계선을 긋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다.[56]

2. 1985년 Guinea/Guinea-Bissau 중재사건

1999년 *Eritrea/Yemen* 중재사건에서 발견되는 Yemen의 Zuqar 섬의 경우와 비교하여 명백히 12해리의 영해를 갖지 못한 섬의 사례는 1985년 *Guinea/Guinea-Bissau* 중재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Guinea의 Alcatraz Island는 북쪽으로 단지 2.25해리의 영해만 가질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1886년 협약'에 언급된 '남쪽 한계선'을 존중해야 했기 때문이다.[57] 즉, Alcatraz Island의 북쪽으로 12해리의 영해를 부여하기 위해 기존에 존재하는 조약이 무시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3. 12해리의 영해를 가지지 못한 섬들이 가지는 함의

이 시점에서 '경계선의 단순함(간결함)' 또는 '조약의 존재'는 12해리에 이르는 영해를 부여하는 것보다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질문에 대

---

55)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in the Second Stage of the Proceedings between Eritrea and Yemen (Maritime Delimitation)* (The Hague, 17 December 1999), *UNRIAA*, Vol. XXII, p.371, para. 161.

56) *Ibid.*, p.371, para. 162.

57) *The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Guinea and Guinea-Bissau* (The Hague, 14 February 1985), *ILM*, Vol. 25, p.298, para. 111.

한 적절한 대답은 어떤 사건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섬에게 최소 12해리의 영해를 부여하는 것이 해양경계획정이 추구하는 형평한 해결의 하나의 예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도달해야 할 형평한 해결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형평한 해결'이라는 목표는 '사안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섬에게 있어 12해리에 이르는 영해는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계선의 단순함(간결함) 또는 조약의 존재와 같이 해양경계획정을 수행하는 국제재판소에게 있어 중요시되는 특정 과제(task) 또는 고려될 다른 관련 사정들(relevant circumstances)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최소 12해리의 영해는 섬에게 반드시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는 2001년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사건에서 ICJ가 Qit'at Jaradah라는 섬을 취급하는데 있어 아무런 효과를 주지 않은 것에 관한 것이다. 위에서 잠시 언급된 것처럼 ICJ는 이 섬이 만조시에 0.4m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상 섬(island)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ICJ는 Qit'at Jaradah를 섬으로 정의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이 섬의 역할은 부인하였다.[58] 즉,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Qit'at Jaradah는 '가치부정효과'(no-effect)[59]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ICJ는 2012년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 v. Colombia)* 사건에서 1985년 *Guinea/Guinea-Bissau* 중재사건의 Alcatraz Island와 2001년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사건의 Qit'at Jaradah를 12해리의 영해를 갖지 못한 섬들의 사례들로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다.[60] 그러나 ICJ의 설명과는 달리 이 두 가지 사례들은 구분을 요하는 문제이다. 1985년 *Guinea/Guinea-Bissau* 중재사건의 Alcatraz Island는 기본적으로 12해리의 영해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섬이었다. 그러나 오로지 '북쪽으로'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1886년 협약 때문에 12해리에 미치지 못하는 영해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

58) *I.C.J. Reports 2001*, pp.104-109, para. 219.

59) 본 논문은 'no-effect'를 김영구, 앞의 책, 304면의 번역에 따라 '가치부정효과'로 번역하고자 한다.

60) See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Nicaragua v. Colombia)*, Judgment of the I.C.J.(19 November 2012), p.67, para. 179.

이는 고려해야 할 관련 사정들에 대한 '비교형량'(weighing-up) 과정을 통해 주어지게 된 결과인 것이다. 즉, Alcatraz Island의 존재는 다른 관련 사정들에 비추어 판단된 것이다. 이와 달리 2001년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사건의 Qit'at Jaradah는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쉽게 말해, Qit'at Jaradah는 영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섬임에도 불구하고, 경계획정의 목적상 그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형평한 해결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61] 즉, Qit'at Jaradah는 고려할 관련 사정들 중 하나이기는 하였지만 일정 정도의 적절한 효과를 부여받아야 할 관련 사정들의 범주에는 해당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섬이 다른 관련 사정들과의 비교형량에 의해 12해리에 미치지 못하는 영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와 해양경계획정에 있어 형평한 해결을 위해 섬의 존재 그 자체에 부여해야 할 '효과'를 구분하지 않은 2012년 ICJ의 태도는 정치하지 못한 것이라 비판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섬의 존재 그 자체가 받을 수 있는 '가치부정효과'(no-effect)와 '절반의 효과'(half-effect)를 해양경계획정 과정에서의 섬의 역할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Ⅶ. 섬의 존재가 받을 수 있는 '가치부정효과'와 '절반의 효과'

1. 가치부정효과

해양경계획정 수행시 국제재판소는 섬의 존재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해양경계획정의 과정에서 섬의 존재가 가져올 불합리한 점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어떤 섬의 존재 그 자체를 무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그 섬의 존재는 해양경계획정에서 '가치부정효과', 즉 어떠한 효과도 받지 않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

61) 이석용, "국제사법재판소의 도서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관련 분쟁해결," 『국제법학회논총』, 제51권 제1호(2006), 140면.

그런데 이처럼 어떤 섬이 가치부정효과를 받는 경우는 해양경계획정의 과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2009년 ICJ가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 사건에서 Serpents' Island를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의 '관련 해안들'(relevant coasts)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 것은 사법적으로 지리적 상태를 왜곡하는 것을 피하고자 함이었다.[62] 이처럼 '관련 해안들의 결정'(determination of relevant coasts)과 관련하여 어떤 섬이 가치부정효과를 받는 것은 '관련 사정들'(relevant circumstances)의 범주에 속하는 섬이 가치부정효과를 받는 것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둘째, 관련 사정들의 범주에 속하지만 가치부정효과를 받는 경우로 위에서 언급한 2001년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사건의 Qit'at Jaradah를 들 수 있다. 이 섬은 매우 작은 섬임에도 불구하고 카타르와 바레인의 관련 해안들 중간쯤에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63] 그 섬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바레인은 불균형적인(disproportionate)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불균형을 방지하는 것이 형평한 해결에 도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ICJ는 Qit'at Jaradah에게 가치부정효과를 부여하며 수행해야 할 해양경계획정의 맥락에서 그 존재를 부인하였던 것이다.

2. 절반의 효과

일단 주지되어야 하는 것은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섬에게 부여하는 '두 종류'의 '절반의 효과'(half-effect)[64]가 존재한다는 것이다.[65] 어떤 섬에게 절반의 효과를 부여한 최초의 국제판례는 1977년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중재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영국의 Scilly Isles는 프랑스의 Ushant Island와 비교하여 절반의 효과를 부여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

62) See *I.C.J. Reports 2009*, pp.109-110, para. 149.

63) *I.C.J. Reports 2001*, pp.104-109, para. 219.

64) 본 논문이 '반분효과'라는 술어 대신에 '절반의 효과'라는 술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반분효과'는 오로지 두 각도 또는 두 방향 중 중간을 택하는 경우만을 지칭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65) See Ki Beom Lee, The Demise of Equitable Principles and the Rise of Relevant Circumstances i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Ph.D. Thesis, The University of Edinburgh, 2012, pp.181-182.

재재판소는 Scilly Isles와 영국 본토 사이의 거리는 Ushant Island와 프랑스 본토 사이의 약 두 배라는 것에 주목하면서, Scilly Isles가 가져올 수 있는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였다.[66] 중재재판소는 Scilly Isles를 기점(base-point)으로 사용한 등거리선과 Scilly Isles를 기점으로 사용하지 않은 등거리선을 '별도로' 긋고 이 두 등거리선들의 중간선을 최종적인 경계선으로 하는 것이 바로 Scilly Isles에 절반의 효과를 부여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67] 즉, 이는 '각도'(angle) 또는 '방향'(direction)과 관련하여 절반의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각도 또는 방향에 대한 절반의 효과는 ICJ의 1982년 *Continental Shelf (Tunisia/Libya)* 사건에서도 부여되었다. 이 사건에서 튀니지에 속하는 Kerkennah Islands의 존재는 ICJ가 고려할 관련 사정들 중의 하나였다.[68] Kerkennah Islands를 고려하지 않은 튀니지의 해안은 자오선에 대하여 42°의 각도를 가진 선으로 그려질 수 있는 반면에 Kerkennah Islands를 고려한 선은 62°의 각도를 가진 선으로 표현될 수 있었다.[69] Kerkennah Islands에게 주어질 수 있는 과도한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ICJ는 절반의 효과를 언급하며 최종적인 경계선 중 한 부분의 각도가 52°라고 결론지었다.[70] 즉, 명백히 각도에 대하여 절반의 효과를 부여한 것이다.

각도 또는 방향에 대한 절반의 효과와는 달리 '위치'(location)와 관련한 절반의 효과 또한 존재한다는 것이 주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치에 대한 절반의 효과는 1984년 ICJ의 *Gulf of Maine* 사건에서 부여되었다. 이 사건을 판결한 ICJ의 '특별재판부'(special Chamber)는 캐나다의 Seal Island에 대하여 절반의 효과를 부여하면 Nova Scotia의 지리적 상태를 왜곡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즉, Seal Island가 Seal Island의 실제 위치와 캐나다 본토 사이의 중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의제'하면 캐나다의 해안의 방향은 왜곡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71]

---

66)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French Republic* (Geneva, 30 June 1977), *UNRIAA*, Vol. XVIII, pp.115-116, para. 248.

67) *Ibid.*, p.117, para. 251.

68) *I.C.J. Reports 1982*, p.88, para. 127.

69) *Ibid.*, pp.88-89, para. 128.

70) *Ibid.*, p.89, para. 129.

71) *I.C.J. Reports 1984*, pp.336-337, para. 222.

이처럼 국제재판소가 섬에게 부여하는 '절반의 효과'에는 두 가지, 즉 각도 또는 방향에 대한 절반의 효과(half-effect)와 위치와 관련한 절반의 효과가 존재하는 것이다.

3. 소 결

해양경계획정에서 섬이 받는 효과는 섬이 가질 수 있는 12해리에 이르는 영해와는 기본적으로 다른 맥락의 문제인 것이다. 즉, 12해리의 영해에 대한 권원을 가진 섬은 경계획정의 과정에서 '가치부정효과'(no-effect) 또는 '절반의 효과'(half-effect)를 부여받아 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섬에게 EEZ 및 대륙붕은 부여하지 못하더라도 최소 12해리의 영해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섬에게 그 섬이 경계획정 과정에서 받을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최종적인 형평한 해결을 위해 특정 경계획정 사건에서 그 섬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섬이 12해리의 영해에 대한 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 섬에게 주어야 할 효과가 마찰을 일으킨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하나가 존재하는데, 이는 2001년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사건에서 Qit'at Jaradah가 '가치부정효과'를 받은 경우이다. Qit'at Jaradah 또한 섬이므로 이 섬은 매우 작은 섬임에도 불구하고 12해리의 영해를 가질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섬이 양국의 관련 해안들의 중간쯤에 존재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형평한 해결을 위해 이 섬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이 필요했다. EEZ 및 대륙붕은 부여하지 못하더라도 섬에게 최소 12해리의 영해를 부여하는 것 그 자체가 해양경계획정이 추구하는 형평한 해결의 여러 모습들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건에서는 이마저 포기된 채 또 다른 형평한 해결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최소 12해리의 영해 부여 또한 절대적인 형평한 해결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Ⅷ. 결 론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국제재판소의 판결들은 섬의 정의와 권원 그리고 부여된 효과에 따른 섬의 역할을 밝히는데 있어 섬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UN해양법협약 제121조와는 다른 방점을 찍고 있다. UN해양법협약의 내용은 어떤 섬이 바위섬(rock)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많은 학문적 논의를 불러일으켜 왔다. 하지만 국제재판소는 실제 해양경계획정 사건에서 어떤 지형이 만조시에도 수면 위에 존재하면 명칭 또는 지질학적 구성에 관계없이 섬으로 간주하고, 일단 섬으로 간주하면 그 섬에 대하여 '형평한 해결'의 한 측면으로 최소 12해리의 영해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국제재판소는 12해리에 이르는 영해를 가진 섬이라 할지라도 그 섬이 경계획정의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하여 '다양한' 효과를 주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섬이 부여받아야 하는 최소 12해리의 영해는 형평한 해결의 한 예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형평한 해결은 아니다. 그 이유는 어떤 섬이 해양경계획정의 과정에서 '가치부정효과'를 받을 때 그 섬에게 있어 최소 12해리의 영해가 보장되지 않는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국제재판소가 어떤 섬에게 12해리에 이르는 영해를 부여하는 것을 형평한 해결의 한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발견되어지는 관련 사정들을 재량적으로 판단한 후 12해리의 영해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제재판소가 일반적으로 어떤 섬에게 최소 12해리의 영해를 보장하는 것이 가져오는 형평한 결과의 '도출'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UN해양법협약 제121조의 해석이 아닌 국제재판소의 판결들을 분석하여 섬의 정의, 권원 및 그 역할을 좀 더 명확하게 논증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있었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17개의 국제재판소의 판결들은 국제법상 섬의 정의, 권원 그리고 역할을 경계획정의 맥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는 UN해양법협약 제121조에 관한 많은 논란이 분명한 결론을 가져오지 못한 것과 대조되고 있는 점이다.

주제어 : 섬, UN해양법협약 제121조, 영해, 형평한 해결, 해양경계획정

〈Abstract〉

The Definition, Entitlement and Effect of an Island or Islands i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Lee, Ki Beom

Article 121 of the 1982 UNCLOS dealing with the regime of islands has caused scholarly controversy because of its ambiguity. However,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have clarified the definition, entitlement and effect of an island or islands, applying Article 121 of the UNCLOS in the process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have acknowledged geographical features above water at high tide as islands, irrespective of their geological composition or size, and have accorded to them the 12NM territorial sea. Moreover, the 12NM territorial sea, in itself, having been granted to islands is one example of an equitable solution which maritime delimitation aims to achieve.

Nevertheless, islands, which have entitlements to the 12NM territorial sea, can be accorded inconsistent effects in the process of maritime delimitation so as to produce an equitable result in a certain case. In other words, the role of an island or islands is indeterminate in a given delimitation case.

In conclusion,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clarifying the definition, entitlement and effect of an island or islands i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have somewhat reduced the ambiguity of Article 121 of the UNCLOS.

Key Words : islands, Article 121 of the UNCLOS, territorial sea, equitable solution, maritime delimitation